

투자일임 계약서

_____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으뜸자산운용 주식회사 (이하 ‘회사’이라 한다)은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이하 ‘투자일임자산’이라 한다)에 대해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에 대해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자일임 서비스에 대하여 투자일임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조 (투자대상)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정의된 금융투자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규정된 파생상품 중 KOSPI200 선물
 - 기타 관련법령에서 허용한 투자일임자산으로서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 증권”과 “파생상품”은 법률 정의상, ‘국내증권과 국내파생상품’ 외에도 ‘해외증권과 해외파생상품’을 모두 포함함
2. 기타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투자일임업의 투자대상자산

제3조 (투자일임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임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1. 투자일임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판단에 대한 사항
4.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5. 유가증권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6. 그 밖의 투자일임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제4조 (투자일임수수료)

- ① 회사는 특별히 별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한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에 따른 기본수수료로 본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점의 투자일임자산액을 기준으로 2.0%(부가가치세 별도))를 기본수수료로 수취한다.
- ② 회사는 [별지]에 성과보수의 산정 방식, 성과보수에 관한 조건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정한 특별한 사항(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한 성과보수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이 없는 한 성과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
- ④ 고객은 기본수수료를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지급하며, 성과수수료는 성과수수료 지급조건에 따라 계약만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사에게 지급한다.
- ⑤ 회사는 고객과 성과수수료를 수취하기로 별도로 정한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보수체계를 적용하며,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서에 성과보수의 산정 방식, 성과보수에 관한 조건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또한 당사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성과보수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이하 '기준지표등')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그 밖에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투자일임자산과는 별도로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30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고객은 같은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수수료의 사용을 위하여 미지급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 내 재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⑧ 회사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채우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경우 별지에서 정한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연체료 유무, 금액 등 별지에 내용 기재)

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등 및 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일임자산이 운용된 경우
 3. 고객이 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
 5.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⑩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 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의2 (투자일임자산의 산정방법)

투자일임자산 산정은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한 금액을 그 투자일임자산액으로 본다.

제5조 (회사의 신의성실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 1 (투자일임 업무의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① 회사가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일임자산에 대한 건전한 운용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준수
 2. 전문적인 조사분석에 의한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
 3. 고객의 투자목적과 위험수용 정도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축 및 위험관리
 4. 일관성 있는 투자원칙 추구
 5.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
- ② 회사는 투자일임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투자일임 업무를 운영한다.
1. 투자일임 상담 및 투자 권유

2. 투자일임계약 체결
3. 투자일임업무 수행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내용과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객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회사는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 고객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회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은 변경된 내용을 회신할 수 있다.
- 회사는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을 확인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
- 회사는 고객이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 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고객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신도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투자일임보고서 제출
5. 투자일임업무 종료 및 성과수수료 발생시 지급

제6조의 2 (이해상충의 방지 및 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정도, 투자예정기간, 재무상태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 ② 고객은 자기의 투자목적,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응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와 상담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자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운용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 ④ 고객은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투자일임자산과 동일한 종목을 매매하는 경우 분기 1회 투자일임보고서에 그 내역을 보고(종목명, 수량, 매매일, 주식평가액 등)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자신 또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계약기간동안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분기 1회 이상 직접 또는 우편, 컴퓨터 통신(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단,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현황
-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매매회전율 등 운용현황
-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 4.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5.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 7. 기타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8조 (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일임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고객에게 현금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현금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함
2. 고객으로부터 현금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3.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일임재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일임재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6.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7.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8.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9.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10.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1.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않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단, 개별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12.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예탁 또는 인출을 위임 받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금융기관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임 받는 행위

13.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기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단, 고객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제8조의 2 (적합성 원칙)

회사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1. 고객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2. 재산상황
3. 취득 및 처분 경험

제8조의 3 (설명 및 고지의무)

①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회사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고객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요한 사항(회사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2. 투자에 따른 위험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위험등급
 4.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5. 계약의 해지·해제
 6. 예상 손실
 7.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8.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명해야 하는 사항
- ② 회사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1. 자문업무에 따른 보수 및 그 결정 기준
2. 제1호에 따른 보수 외에 추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3.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취득·처분에 따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

제9조 (비밀유지 의무)

-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임자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효력을 갖는다.
- ③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자산 운용계좌에 대해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련된 자료를 계좌개설 영업점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통지의무)

- ① 고객은 거래증권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지정된 투자서비스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별지의 세부 계약조건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통지한다. 단,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통지해야 한다.
-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변경내용을 통지하지 않거나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고객자산의 인출 등)

-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임자산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3영업일 이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투자일임자산의 인출을 회사에 위탁할 수 없다.

제12조 (운용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임원과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당사의 임원 성명 및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직위	주요경력	비 고

성명	직위	주요경력	비고

위 임원은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회사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분율(%)	비고
합계			%	

위 주주는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15조 (계약의 유효기간)

-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별지에 기재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②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고객은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 또는 회사와 합의한 기타의 방법에 의해 이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을 시정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계좌에 가압류 또는 압류절차가 개시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회사의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일임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거래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일임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의 서면상의 지시에 의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일임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재산을 고객에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인도한다. 다만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고객이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고객이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고객이 대리인 선정에 관한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사의 고객에 대한 의무를 대리인에 대한 의무로 대체한다.

제19조 (계약, 만료, 해지시의 자산형태)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거나 만료하는 시점에서의 투자일임자산의 형태는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한다. 단,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경우 자산의 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한 시세가 있는 것에 한정한다.

제20조 (투자일임자산의 평가)

투자일임자산의 평가는 계약체결시는 계약일 전일, 계약만료시는 만료일, 계약 해지시는 해지일 전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기준일 익영업일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등)에 의한 재산 종류별 평가방법
2. 기타 투자일임자산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합의에 의한다.

제21조 (투자실적의 평가)

1.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평가자산의 증감률로 한다. 평가자산의 계산은 제20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2.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배당락 가격, 권리락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한다.

제22조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선정과 변경)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운용인력 중에서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운용인력을 직접 선임하여 투자일임을 한다.

- ② 회사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운용인력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고객이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운용인력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⑧ 고객은 제5항 단서에 의한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운용인력 재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의 2 (담당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담당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명	주요경력(전문자격내용)	전문인력 해당사항

당해 임직원은 과거에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제23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고객의 운용지시 포함)로 인한 손실
2. 제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2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관련조항)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 (관계법규 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 등을 준수한다.

제28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 (약관의 적용)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기타 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고객과 회사는 위의 각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고객”

주소: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성명: (인)

“회사”

으뜸자산운용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중구 태종로 14, 501호(남포동,와이디빌딩)

대표이사 김 인 근 (인)

[별지]

투자일임계약에 관한 사항

구 분	세부내용(원 / %)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년)
계약금액	원정(₩)
내역	주식형 / 혼합형
기본수수료	계약금액의 연 % (금일만원 미만은 절사)
기본수수료 지급시기	선취 / 없음
	※ 선취수수료 청구시, 고객의 중도해지시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성과수수료	고객과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중도해지수수료	<p>운용수익의 _____%</p> <p>※ 단, 중도해지수수료는 선취수수료를 징구하는 계약의 경우, 수익금 범위내로 하며 운용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연체수수료	연 _____%
지급방법	<p>수수료 입금 계좌 :</p> <p>예금주 : 회사(주)</p>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증권회사 및 계좌	<p>거 래 증 권 회 사 명 :</p> <p>계좌번호 및 계 좌 명 :</p> <p>주문담당자 및 연락처 :</p> <p>주문담당자 E-MAIL :</p>
고객에 대한 통지장소	<p>· 주 소 :</p> <p>· 전 화 :</p> <p>· E - mail :</p>
회사에 대한 통지장소	<p>· 주 소 :</p> <p>· 전 화 : 02)</p> <p>· F A X : 02)</p>
기타사항	
투자일임담당자 (투자운용인력)	<p>· 성명 : 직급 : 주요 경력:</p> <p>당해 임직원은 과거에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p>